

**신규대비조문표(2026.05.21)**

변경전	변경후						
<p align="center">- 이하생략-</p> <p>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p> <p>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1]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p> <p>가.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p> <p>나. 정성적 요소: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p> <p>②- ④ 생략</p> <p align="center">- 신 설-</p>	<p align="center">- 이하생략-</p> <p>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p> <p><b>①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b></p> <p><b>①기초자산의변동성②신용등급③상품구조의 복잡성④최대원금손실 가능액⑤환매, 매매의 용이성⑥환율의 변동성⑦그밖의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b></p> <p><b>이때 각 위험요소별 다음사항 및 [별표2]에서 정한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별도 정함이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b></p> <p><b>또한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b></p> <p>②- ④ 생략</p> <p>⑤위험등급 산정시기는 신규상품을 출시 또는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펀드 또는 추가형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등급을 재산정하여 조정할수 있다.</p> <p>⑥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p> <p align="center"><b>위험등급 구간별 명칭</b></p> <table align="center" border="1"> <tr> <td>1등급 (고위험)</td> <td>2등급</td> <td>3등급</td> <td>4등급</td> <td>5등급</td> <td>6등급 (저위험)</td> </tr> </table>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	----------	-------	-------	----------

⑦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익률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어려워 시장위험 측정수단으로 Var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할수 있다.

- 이하생략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